

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속

韓国語

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(이하 「취학 지원금」)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를 국가가 학생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 대여형 장학금과는 달리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. 신입 1 학년생은 2 회(4 월과 7 월)의 신청수속이 필요합니다(7 월 수속은 매년 필요합니다).

지급대상의 요건

- 보호자의 「도·부·현 소득할주민세액」과 「시·정·촌 소득할주민세액」을 합산한 금액이 507,000 엔 미만일 것.
연수입으로는 910 만엔 정도이지만, 부양 등의 조건에 따라 변경됩니다.
4 월은 전년도 분의 액수, 7 월은 금년도 분의 액수로 판단합니다.
부모가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 합계액으로 합니다.
- 고교에 재학한 기간이 통산 36 개월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.
정시제·통신제 과정의 경우는 48 개월입니다. 국립·공립·사립 모두 해당합니다.
- 신청서와 과세증명서 등을 기한 내에 학교에 제출할 것.

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 수업료는 연간 118,800 엔으로, 4 분기로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. 취학 지원금의 수급에는 심사가 있습니다. 4 월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7 월 상순(예정)에 학교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.

수속에 필요한 과세증명서 등에 대하여

- ① 「課税 証明書, 과세증명서」는 시·정·촌 세금 증명서 창구에서 발행됩니다.
유료입니다.
 - 소득공제, 부양공제 등 항목을 생략하지 않고 모두 기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.
 - 생활보호 수급 세대인 분은 「生活保護 受給 証明書, 생활보호 수급증명서」를 제출해 주십시오.
 - 「課税 証明書, 과세증명서」, 「生活保護 受給 証明書, 생활보호 수급증명서」는 모두 3 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이 필요합니다. 복사된 것은 무효입니다. 제출된 원본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② 「課税 証明書, 과세증명서」를 대신하여 다음 서류를 복사하셔도 됩니다.
 - 급여(샐러리맨) 세대로, 급여 소득만 소득이 있는 분은, 작년 5~6 월 경에 근무처로부터 배부된 「特別 徴収 税額 の 決定 通知書 (納税 義務者用)」,

특별징수세액의 결정통지서(납세의무자용)」

- 자영업 세대 등에 해당하는 분은 작년 5~6 월 경에 시·정·촌으로부터 송부받은 のうぜいつうちしょ 「納稅通知書, 납세통지서」
- 상기 서류들은 모두 「課稅證明書, 과세증명서」かぜいしょうめいしょ 를 대신하여 「증명서」로서 제출 받는 서류이므로 연도, 주소, 성명, 소득공제·부양공제의 내용, 발행자명, 공인이 모두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수정신고나 경정에 의해 세액이 변경된 경우나 그 밖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「課稅證明書, 과세증명서」かぜいしょうめいしょ 가 필요합니다.
- A3 용지를 사용해, 실제 크기로 분할하지 않고 용지 1 장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도록 복사해 주십시오.
- 「納稅通知書, 납세통지서」のうぜいつうちしょ 가 2 장 이상인 경우는, 모든 페이지를 실제 크기로 복사해 주십시오.
- 「源泉徴収票, 원천징수표」げんせんちゆうしゅうひょう 나 「確定申告書, 확정신고서」かくていしんこくしょ 부분은 「課稅證明書, 과세증명서」かぜいしょうめいしょ 대신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장학을 위한 급부금을 받기 위한 수속

장학을 위한 급부금(이하 「장학급부금」)은 보호자 전원(부모양쪽)의 「도·부·현 소득할주민세액」과 「시·정·촌 소득할주민세액」을 합산한 금액이 0 엔인 세대(이하 「비과세 세대」) 또는 생활보호 수급 세대에게, 수업료 이외의 교육에 관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. 신청수속은 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는 도·도·부·현에서 연 1 회(7 월) 행합니다.

지급액(연액)은 생활보호 수급세대가 32,300 엔, 비과세 세대가 80,800 엔입니다.

단, 비과세 세대에서 부양받고 있는 형(오빠), 누나(언니)가 고등학생의 경우 또는 비과세 세대로 고등학생 외에 15 세 이상 23 세 미만의 중학생 이외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129,700 엔입니다. 이 경우 가족의 부양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.

취학 지원금과 장학 급부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, 보호자 전원이 비과세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장학 급부금을 이체할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의 복사본이 필요합니다.

문의처: 학교 또는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시설재무과(06-6941-0351)